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연금재단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 선교사업의 일환인 총회연금 사업을 관장하고 총회에서 위임하는 기독교 선교 및 사회봉사사업을 수행하며 총회 소속 교역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총회 연금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연금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

제3조 (소재지)

1.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가입범위)

1. 총회에 소속한 지 교회와 선교기관 또는 연합기관에 시무하는 교역자
2. 국외에 파송되어 선교와 봉사의 직무에 유급으로 시무하는 교역자
3. 총회 처무 규정에 따라 임명된 직원

제5조 (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금 및 기금 관리 운용 사업
2. 기독교 선교 및 사회봉사사업
3. 후생 복지사업
4. 기타 전 각 호에 수반되는 부대사업

제2장 임 원

제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5인(이사장 1인, 상임이사 1인, 여성 1인 이상 포함)
2. 감사 2인

제7조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첫 임원의 반수는 임기의 반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선임방법)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를 거쳐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기 전의 임원 해임은 이사회 결의로 총회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9조 (임원 선임의 제한)

1. 이사는 각 이사 상호 간에 민법 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 관계가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감사는 감사 상호 간에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제1호에 규정한 관계가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1.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2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전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 대행자를 지명한다. 이 경우 임시진행은 이사중 최고 연장자로 한다.
4.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3조 (상임이사의 선임과 직무)

1. 총회 총무는 당연직 이사로서 상임이사를 겸임한다.
2.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업무를 관장한다.

제1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치 않을 때에는 총회와 주무 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와 그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3장 이사회

제15조 (이사회 구성 및 기능)

1.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로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4)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 5) 재산 취득, 처분 및 보유 관리에 관한 사항
- 6)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 7) 사무국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
- 8) 제 규정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 9)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6조 (이사회 개회 및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할 수 있다.
2. 이사회 의결은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 단, 재산 처분을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17조 (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8조 (이사회 소집)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 이사회는 매년 2회, 2월과 10월에 소집한다.
3.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전원이 소집을 요구할 때, 재적이사 과반수가 부의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소집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전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결의할 수 있다.

제19조 (이사회 소집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본 정관 제14조 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전항의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0조 (회의록)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일시
2. 장소
3. 참석위원 명단
4. 결의사항

제21조 (서면결의)

이사장이 부의 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결의로서 이사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단, 재적 이사 4분의 3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장 재산과 회계

제22조 (재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기본 재산은 이 법인의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보통 재산은 기본 재산 이외의 재산

제23조 (재산관리)

1. 기본 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34

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기본 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3. 연금기금관리를 위하여 이사회 내에 기금관리 위원회를 둔다.

제24조 (운영비)

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제 비용은 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5조 (세계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연도 세계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 기본 재산으로 한다.

제26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 (예산 편성)

이 법인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회계 처리 방법)

이 법인의 회계 처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 규 회계 처리 원칙과 총회 제정 회계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0조 (재무제표 작성)

이사장은 6월 말과 12월 말 현재로 다음의 서류와 부속 명세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잉여금 처분 계산서 (결손금 처리 계산서)

4. 동 부속명세서

제5장 해 산

제31조 (해산)

1.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승인을 얻어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재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결된 후 총회 산하의 법인이나 재단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32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이사 중에서 청산인을 선출하되 총회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사 무 국

제33조 (사무국 설치)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사무국에는 국장 1인과 직원 약간을 둔다.
2. 사무국장은 상임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지시를 받아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한다.
4.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사무국 직원은 상임이사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6. 직원의 정년과 보수 등 인사관리는 총회 사무처 처무 규정에 준한다.

제7장 보 칙

제34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서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공고)

이 법인의 공고 사항은 한국기독교장로회 회보에 공고한다.

제36조 (사업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의 사업 실적 및 수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 목록과 업무 현황 및 감사 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규정 및 세칙)

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 및 세칙은 이사회의 결의로 제정하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 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권리 승계)

총회 은급 및 생활보장제위원회 규정에 의한 가입자와 재산에 대한 권리 의무는 이 법인이 승계한다.

3. (설립 당초의 임원과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임원 명단 및 임기는 생략)

1990년 9월 제75회 총회 제정

1996년 9월 제81회 총회 개정

2002년 9월 제87회 총회 개정

2006년 9월 제91회 총회 개정

2007년 9월 제92회 총회 개정

2013년 9월 제98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